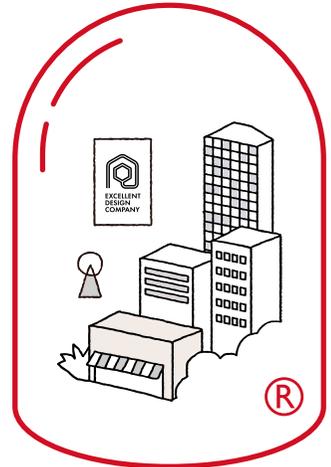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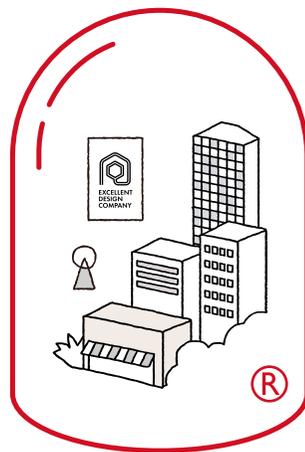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8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10
디자인공지증명	12
디자인표준계약서	14
디자이너경력관리	15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16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58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72
노무 및 회계 관련	86
기타 및 특수사례	94

사례 찾아보기

100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하세요.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25.9%가 국내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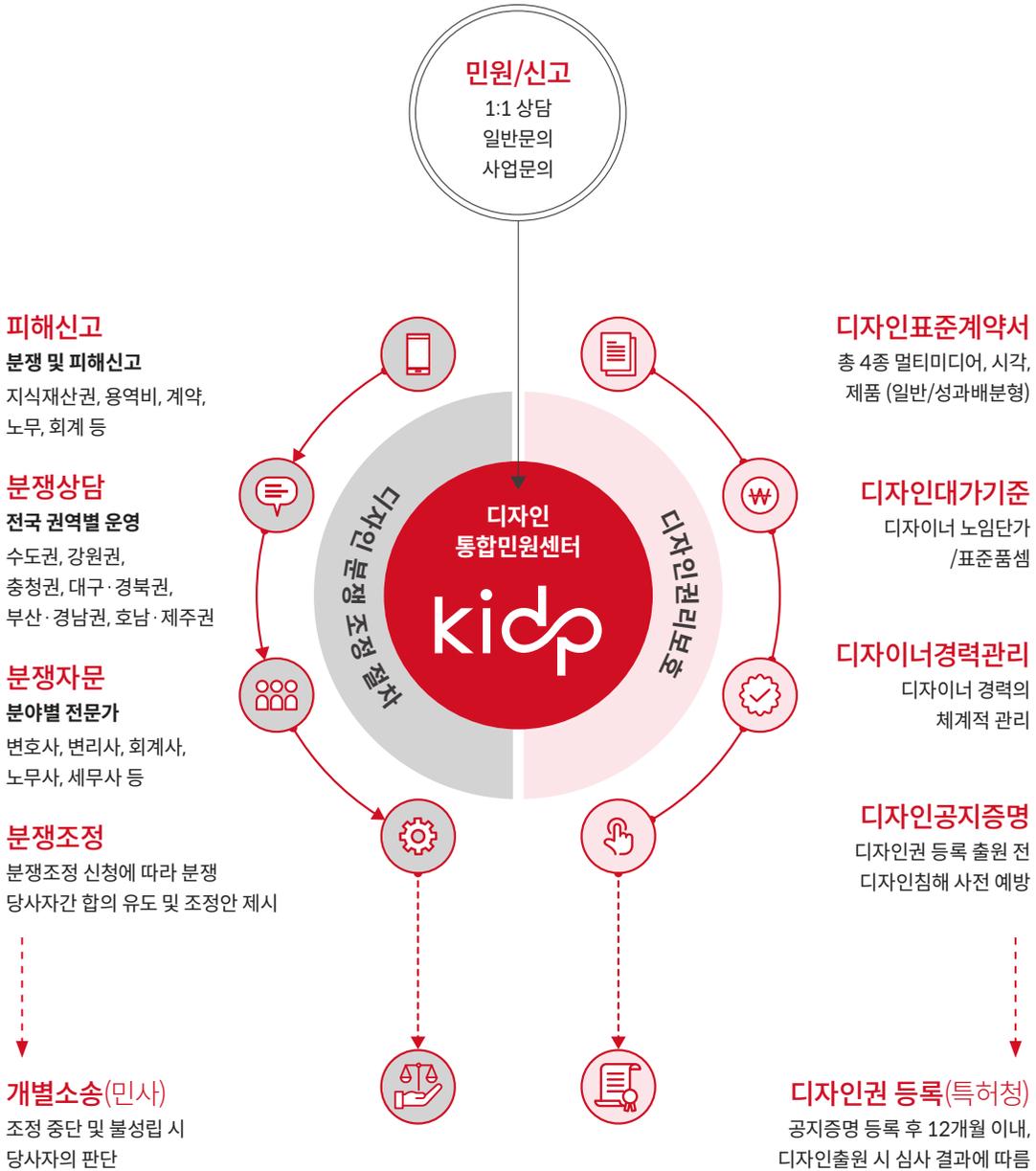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리 보호, 법률 지원,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인권과 창작물로서의 디자인 권리가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고, 전국 디자인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권역별 디자인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 창작물과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자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디자인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자인계와 디자이너의 권리가 타인의 모방이나 권리 침해로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 1 디자인법률자문단
- 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 3 디자인공지증명
- 4 디자인표준계약서
- 5 디자이너경력관리

1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디자인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 간 1:1 맞춤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업계 관련자

지원 내용

피해 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

전화, 우편, 방문 접수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수도권) | 1577-4964 | ko-dia@daum.net
광주디자인진흥원(호남·제주권) | 062-611-5061 | law@gdc.or.kr
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경남권) | 051-790-1034 | kjseon@dcb.or.kr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대구·경북권) | 053-740-0038 | kjw@dgdc.or.kr
대전디자인진흥원(충청권) | 042-930-7822 | shbaek@didp.or.kr
강원디자인진흥원(강원권) | 033-252-5500 | lmk0706@gidp.kr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048 | drights@kidp.or.kr





자문절차

- | | | |
|----------|------------------------------------|--|
| 1 | 피해사례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 신고센터 ◦ 법률상담 신청(신청 방법: 전화, 우편, 방문 접수) |
| 2 | 피해 유형별 DB화 및 상담 연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내용 파악 후 피해 유형별 분류 DB화 ◦ 담당 자문위원 지정 및 신청인과의 1:1 상담 연결 |
| 3 | 신고서 검토 및 법률상담 진행
자문위원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검토 ◦ 상담 신청인과의 1:1 상담 진행(전화 상담 / 필요시 방문 상담 가능) |
| 4 | 법률상담카드 작성 및 전달
자문위원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 및 자문 종료 후 신고센터에 법률상담카드 제출 |
| 5 | 자문의견 전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센터 담당 자문위원으로부터 받은 법률상담카드를 신청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법률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재확인 |

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 관련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조정기구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원 대상

디자인전문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디자이너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중에 있는 자

지원 내용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신청 방법

웹사이트 drights.kidp.or.kr 내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디자인피해신고센터 및 법률자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각 지역 디자인진흥원 및 디자인산업연합회가 공동 운영하는 디자인피해신고센터 및 법률자문서비스에서도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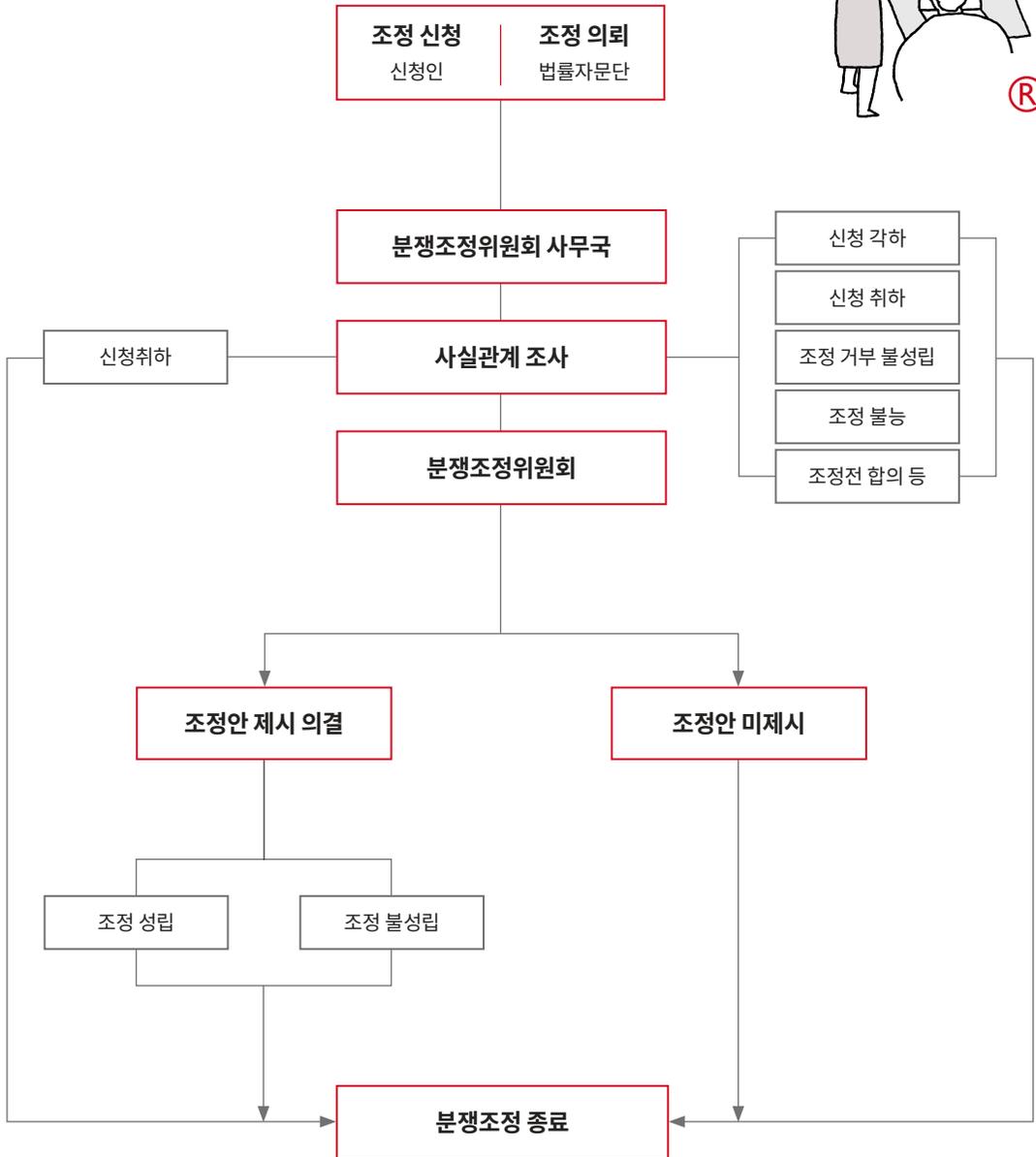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디자인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되고 피신청인에게는 답변서 양식을 포함하여 조정 안내서류 등이 함께 송부됨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048 | drights@kidp.or.kr



3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공지증명은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디자이너 등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공지증명의 장점

- ① 디자인출원 등록 전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에 공지하여, 개발 과정 중 창작된 디자인 안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모방(Dead Copy)을 방지
- ② 특허 등록을 거치지 않은 디자인 안에 대해서도 경쟁업체 등의 모방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응 가능

* 공지증명(공개)된 디자인은 특허청 디자인권·특허 심사 시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 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 예방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공지증명의 차이점

구분	디자인 등록	디자인공지증명
목적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공지 사실 증명
처리 기간	출원 후 6개월 내외	짧음(1~3일)
권리 범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 9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배타적 권리 없음◦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출원한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 가능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인이 출원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 제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온라인 제출◦ 실체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 비용: 94,000원◦ 설정등록료(1~3년분): 75,000원◦ 연차등록료: 4년 후부터 3년 단위로 누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20,000원(대학생 이하 무료)* 번리사 대행 불필요, 직접 등록 가능
보호 기간	존속 기간 20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간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drights.kidp.or.kr | 031-780-2234, 2048 | drights@kidp.or.kr

디자인공지증명 신청 절차



STEP 01
신청서 작성



STEP 02
첨부서류 업로드



STEP 03
등록기관의 서류 검토



STEP 04
수수료 납부



STEP 05
결과 통보 및 증명서 출력



STEP 06
등록 자료 특허청 이관

4 디자인표준계약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디자인 업계 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늘리고 공정한 디자인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및 성과배분(제품디자인 관련)와 관련된 총 4종의 표준계약서를 배포 중입니다.

*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 2(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평등한 계약 관계

‘갑’과 ‘을’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 관계 명시



피해예방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용역 단계별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



계약서 4종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성과배분(제품디자인 관련)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법무팀
drights.kidp.or.kr
031-780-2234, 2048
drights@kid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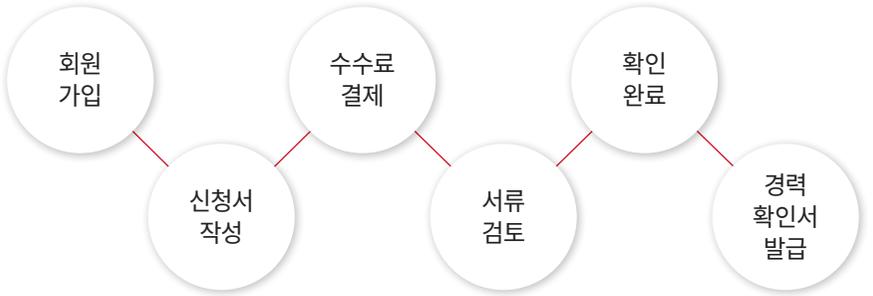


5 디자이너경력관리

디자이너경력관리는 디자이너 개개인이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 확인 제도입니다. 근무했던 직장의 폐업·합병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러 근무지에 요청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경력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경력 확인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증빙 필요시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에서 경력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경력관리 신청 절차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이용 수수료 체계



문의처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designcareer.kodfa.org
02-3445-5198
dsncareer@hanmail.net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2차저작물 #IP #UI/UX #간판 #개인정보 #공개된디자인 #공유 #굿즈
#도서 #도안 #도용 #드로잉 #디자인권 #디자인출원 #디자인템플릿 #모
방 #미니멀리즘 #범위 #브랜드 #사용계약 #사진 #상표권 #상표등록 #
상표출원 #수출상품 #시각디자인 #아이템보호 #애니메이션 #양도 #영
상 #우선심사제도 #유사상표 #유사제품 #의류 #저작물 #제품디자인 #
직무발명 #창업 #출판 #침해 #캐릭터 #특허 #해외상표출원

지식재산권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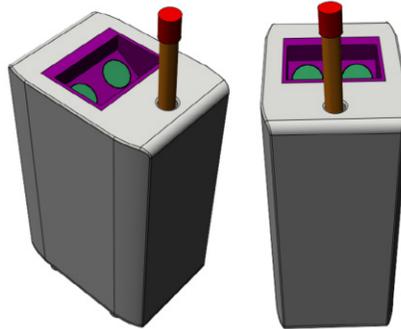
01 자사 개발제품의 특허등록 가능 여부와 보호 방법을 문의합니다.

KEYWORD 디자인출원, 제품디자인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살균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2021년 살균기에 대한 특허출원을 1건 진행했습니다. 특허와 함께 디자인 출원들 통하여 보다 확실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디자인적인 부분과 추가 특허출원 가능한 부분, 특허권의 보호 범위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문의제품: 필기구 살균기]

자문의견

특허출원과 특허 보호 범위

관련 규정

- 1) 신규사항 추가 금지특허법에 따르면, 일단 출원이 완료된 특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데, 특허법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제47조)을 두고 있습니다.
- 2)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심사 결과 등록받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출원된 특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원된 내용에 추가되는 기술적 특징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허출원을 통하여 보호를 도모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된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발명의 설명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출원에 기반을 둔 별도의 출원(특허법상의 분할 출원)을 통하여 추가적인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이는 심사를 거친 다음 정해지므로 현 상태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 등록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 특허의 도면이나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분할출원을 통하여 보호범위의 확장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

귀사의 살균기는 디자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디자인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출원 시 첨부해야 할 도면을 준비하여 출원을 진행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살균기에 대해 이미 출원된 특허에서는 새로운 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나, 그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할 출원을 통하여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02 자사 화장품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가능할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KEYWORD 상표등록, 브랜드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으로 영역 확대를 위해 개인 맞춤형 파운데이션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브랜드 네임 상표출원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합니다.

* 최종 제안 네임 : minique X [미니크 엑스]

mine(프/안색, 낮)과 unique(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두 단어의 조합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는 네임

* 의뢰 상표분류: 03류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콤팩트용 메이크업 화장품,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크림 등

자문의견

상표법 제33조: 상표 자체의 거절이유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재료,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당히 낮게 인정됩니다.

상표법 제34조 등: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불허

1)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합니다.

2)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기준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표 요부의 칭호, 외관 관념을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경우, 주요 부분 중 하나가 동일/유사하면 유사상표로 판단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33조가 적용될 정도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 조가 적용되는 상표의 주요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니크 엑스'의 '미니크'로 발음될 수 있는 문자부분을 포함하는 'Daminique, illuminique, Dominique' 등과 '미니크'와 유사한 '미니코'로 발음될 수 있는 'MINICO'가 검색됩니다만, 대상상표는 '엑스'가 결합되어 있어, 대상상표와 검색된 상표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경우 발음이 상이하므로, 대상상표는 검색상표들과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상표들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낮고 등록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03 자사 개발 캠핑용품의 디자인 출원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KEYWORD 디자인출원, 제품디자인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아웃도어 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금번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생산한 캠핑용 화로대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통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출원의 준비, 절차, 등록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합니다.

[문의제품]



자문의견

- 1) 문의제품은 “캠핑용 화로대”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합니다.
- 2) 캠핑용 화로대 제품의 정형화된 직육면체 또는 원통형 구조와 달리, 역사다리꼴 단면이 길게 늘어진 특유의 형상과 안정성이 강조된 받침대 형상, 곳곳에 새겨진 로고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화로대에 비하여 새로운 것임과 동시에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문의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문의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 의뢰인의 디자인 원본파일 제공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KEYWORD 저작권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3년전 의뢰인 A에게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 의뢰를 받았습니다. 로고와 각종 요소를 포함하는 디자인으로 간판, 현수막, 시트지 등을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당사와 A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당사가 제공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A의 매장 이전으로 간판을 이전/설치하는 과정에서 A가 간판 및 현수막, 시트지 등의 모든 디자인 인물의 원본파일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부 유실된 파일이 있어 보존되어 있는 파일만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는 유실된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디자인 원본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본 파일들을 A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작권 귀속의 원칙

인간의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작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귀사에 속합니다. 간판 등의 디자인 및 설치 의뢰의 경우 통상적으로 원본 파일에 대한 저작권(소유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뢰인은 계약서상에 이에 대해 기재하거나, 적어도 구두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귀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라도 디자인 원본 파일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을 의뢰인이 갖는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귀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견적서에도 디자인 내용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으나, 디자인 원본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기재는 일절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판이전시 제공한 견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간판 등의 디자인 원본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저작권은 귀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 1) 별도의 계약이나 구두 합의가 없으므로, 간판 등의 디자인 원본 파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저작권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간판 등의 디자인 원본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2) 다만,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간판 등의 디자인 및 설치를 의뢰하면 당연히 원본 파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저작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서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디자인 작업은 무리가 있으니 현재 보존되어 있는 원본 파일들을 전달하여 분쟁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05 신규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입니다.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KEYWORD 상표등록, 디자인 출원, 브랜드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미나리를 가공하여 미나리 젤리, 미나리 농축액 등의 미나리 가공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힘나리'를 론칭하고자, 아래와 같이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표등록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의 검색

- 1)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
- 2) 검색 표장: 힘나+힘내+힘나리+Himnari+Himnali+heemnari+heemnali+힘나라+Himnara+Himnala+힘나라레+힘나라레+Himnarae+Himnare
- 3) 검색 상품: 29류 미나리 가공식품, 미나리젤리, 야채젤리 등과 그 소매업

※상표검색 결과

검색상표

유사 [9] 힘나링

힘나링	상품분류: 05 32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출원(국제등록)번호: 4020210101133	출원(국제등록)일자: 2021.05.17
	등록번호:	등록일자:
	출원공고번호:	출원공고일자:
	도형코드:	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유사 [12] 힘내차 HimNaCha

힘내차 HimNaCha	상품분류: 05 30 32	출원인: 오택삼
	출원(국제등록)번호: 4020190186546	출원(국제등록)일자: 2019.12.02
	등록번호: 4016346740000	등록일자: 2021.02.18
	출원공고번호: 4020200105904	출원공고일자: 2020.10.22
	도형코드:	대리인:

결론

대상상표는 검색상표들과 지정상품은 유사하나, 그 발음상의 차이가 커서 검색된 상표에 의해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힘이 나는 미나리 가공식품으로 인식될 경우, 상품의 효능 등을 직감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된 아래의 다른 도안들과 같이 도안화를 정도를 높이거나, 다른 도안을 추가 결합하여 출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06 디자인을 등록해 자사의 제품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KEYWORD 디자인출원, 제품디자인, 도용방지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자동차용 와이퍼 제조사이며, 자동차용 하이브리드 와이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와이퍼 제조사 및 수입 업체들의 수가 많이 늘어, 저희만의 특화된 와이퍼 개발을 연구하였습니다. 와이퍼는 컨벤셔널 와이퍼(기존 철 제품)와 하이브리드 와이퍼(플라스틱)가 보통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와이퍼는 철구조물에는 검은색 도장을 하고, 플라스틱 제품은 검은색 수지로 만들고 있어, 모든 제품이 획일하게 검은색입니다. 와이퍼는 차량 외부에 노출되는 아이템이지만 검은색이라는 획일적인 색상이 아쉬워, 저희는 와이퍼에 여러 가지 색깔 및 무늬를 입혀 시각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출시되어 인기를 끌게 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센터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진행하고자 자문을 요청합니다.

[문의제품]



자문의견

문의한 와이퍼의 경우, 와이퍼 자체로는 공지기술, 공지디자인이므로 이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무늬가 적용된 와이퍼에 대하여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무늬가 귀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작권 확보는 어려우며, 저작권 소진이론 등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제품 판매 시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통하여 해당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 등을 통하여 시장우위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07 개발한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KEYWORD 디자인출원, 제품디자인, 도용방지

대구

사례경과

2020년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사업을 통해 부영이를 형상화한 양산·우산 핸들 디자인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디자인]



자문의견

독특한 형상을 가지는 양산·우산 핸들과 관련한 디자인권 확보전략에 대하여

유형적인 물품의 외관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 즉,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심미적인 물품의 형상에 대해 디자인출원을 통하여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을 보호할 뿐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으므로 물품의 기능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지만 시각적인 형상, 심미감이 다를 경우에 이는 별개의 디자인 물품으로서 상호 권리 저촉 없이 각자 사용되고 디자인등록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우산 핸들은 우산 본체와 연결되는 중심축 하단에 마련되어 사용자가 손으로 쥐는 부분으로서 사용자가 중심축을 직접 쥐는 것에 비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촉감 제공 및 안정적으로 우산을 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캐릭터 등을 채용함으로써 심미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우산 핸들과 서로 공통되겠지만, 귀하가 의뢰한 양산·우산 핸들은 형상적인 부분에서 부영이 형상을 채용함으로써 기존의 형상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창작적 미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디자인등록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8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KEYWORD 디자인출원, 제품디자인, 도용방지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스포츠 용품 제조/판매 기업으로 아래의 피트니스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피트니스 센서는 각종 센서를 탑재하여, 사용자의 동작, 운동횟수 등을 센싱하고 그 센싱 경과를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취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으로, 취합된 결과를 운동횟수 카운팅, 칼로리 산출, 개인별 운동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을 통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여, 디자인 출원의 준비, 출원절차, 등록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대상제품 피트니스 센서의 경우: 앞서 살펴본 등록요건 순으로 검토

- 1) 문의제품은 '피트니스 센서'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하여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합니다.
- 2) 피트니스 센서 제품에 정형화된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본 제품은 기본적으로 원판형의 형상을 가지되 상부가 유선형으로 유려하게 돌출되는 구조를 가지며, 상부에 특유의 모양이 마련되어 있어, 기존의 피트니스 센서들에 비하여 새로운 것임과 동시에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문의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문의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9 자사의 신규브랜드가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KEYWORD 디자인출원, 상표등록, 브랜드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디자인 및 웹/앱 개발 등의 외주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디자인 에이전시입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발 맞춰 무인 키오스크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였고, 현재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납품 전문 브랜드 infosk(인포스크)를 런칭 준비중에 있으며, 신규 브랜드 infosk에 대한 지식재산권(상표등록) 등록을 신청합니다.

[문의상표] 

자문의견

'infosk'는 색상을 달리하는 'o'에 의하여 'inf', 'osk', 'inf ~ osk'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호칭될 수 있어 글자의 색상이 동일한 'infosk'에 비하여 더 많은 선행상표와 대비될 가능성이 높아 상표심사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상표를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infosk'로 출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술한 디자인법률자문상담을 토대로 신청인은 아래에 도시한 'infosk' 상표를 '키오스크, 무인결제기용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09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상표출원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08월 17일자로 국내상표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원상표] 

10 자사의 신규브랜드가 출원이 가능할까요?

KEYWORD 디자인출원, 상표출원, 브랜드

대구

사례경과

당사는 사무복, 병원복, 수술복, 간호복 등의 유니폼 전문기업입니다. 현재 자사제품에 대한 고유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래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표출원을 위한 준비, 절차 및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합니다.

[문의상표]



자문의견

대상상표의 문자부 'THE UNIFORM LAB'에서 UNIFORM은 상품자체를 나타내나, 문자부에는 LAB이 결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알파벳 U가 도안화되어 결합되어 있으므로, 대상 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상표에는 상표법 제33조에 따른 자체적 거절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에서는 타인의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에 따른 등록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의 검색 방향

- 1)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
- 2) 검색 표장: (the+더)*(유니폼+uniform)/(유니폼+uniform)*(lab+랩+랩+rab+leb+reb)
- 3) 검색 상품: 25류- 의류/팬츠, 코트, 스커트, 재킷, 원피스, 청바지, 기성복, 모자/ 티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카디건, 셔츠, 내의/ 양말, 장갑, 양말커버, 목도리, 스카프/ 스포츠의류, 트레이닝복, 스노우보드용 장갑/ 신발/의복용 벨트, 의류용 멜빵 등

대상상표의 경우 UNIFORM에 식별력 있는 문자 'LAB' 가 결합되어 있고, 알파벳 U를 형상화한 식별력 있는 도안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대상상표는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은 상술한 디자인법률자문상담을 토대로 국내상표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11 자사와 발주사 간의 디자인 저작권의 정확한 범위

KEYWORD 저작권의 범위

대구

사례경과

자사와 발주사 사이의 디자인 저작권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문의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 됩니다.

다만, 발주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이 발주사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받는다면, 저작권을 발주사에게 양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때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특약으로 포함하지 않는 이상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 45조) 따라서 계약서에 저작권의 양도의 범위를 특정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책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한가요?

KEYWORD 디자인출원, 도서

대전

사례경과

잡지나 단행본 등과 같은 책도 디자인출원이 가능한가요?

자문의견

도서는 그 도서 전체의 모양과 외관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서나 단행본 등의 경우 그 모양 및 외관에 대한 보호인 디자인등록출원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동일 브랜드, 캐릭터를 서로 다른 제품(의류, 식기 등)에 적용할 때 각각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하나요?

KEYWORD 디자인출원, 시각디자인

대전

사례경과

디자인등록 출원이나 상표등록출원을 하게 될 때 제품 디자인의 경우 해당 제품이 속하는 물품류나 상품류로 출원을 하면 되는데 시각디자인의 경우 의류나 컵과 같이 생산제품별로 다수의 출원을 해야 하는 점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의 경우 물품별로 출원을 해야 하나요?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당 1형태로 출원되어야 합니다.

<근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 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스티커, 라벨, 표딱지 등에 대해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복수 종류 물품의 외부에 스티커 등을 부착한다 하더라도 디자인권이 보호하는 범위는 스티커, 라벨, 표딱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물품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14 학교 강의 중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KEYWORD 디자인출원, 시각디자인

대전

사례경과

대학교 강의 중 제작하였던 디자인들을 타인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은데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저작권 등록으로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도 있으나,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사용 형태나 방법 등에 따라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등록,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표장이나 디자인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공식적인 효과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저작권의 경우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함께 권리가 성립됩니다.

15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KEYWORD 사진, 편집, 저작권 침해

광주

사례경과

스튜디오에 촬영의뢰 후 받은 사진을 편집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사진의 경우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판매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편집한 결과물은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진을 편집하여 판매할 경우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16 놀이터 바닥 디자인, 도안을 보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KEYWORD 디자인 출원, 도안

광주

사례경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놀이터 바닥 디자인의 보호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귀사가 보유한 바닥 디자인은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특허나 실용신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을 통해 그 외관을 보호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동물 모양이나 게임 모양을 도안화하여 바닥 디자인을 할 경우 '시설바닥용 탄성포장재'라는 물품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아스팔트에 디자인된 경우까지 유사 범위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유사한 동물모양의 경우 유사범위까지 보호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각각 디자인 출원을 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17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KEYWORD 디자인출원, 캐릭터

대전

사례경과

캐릭터 디자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캐릭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만화,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등의 특징이나 성격 등 독창적인 개성이 내재되어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를 문구류나 의류 등에 장식품이나 도안하여 부착하는 경우를 캐릭터의 상품화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실정법에서 인정하는 독자적인 권리는 아니고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태나 방법 등에 따라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8 유사제품이나 모방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KEYWORD 출원, 유사 제품, 모방 방지

광주

사례경과

현재 제작 중인 자사 제품들이 유사제품이나 모방제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제품이 제작되면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 출원 후 시장에 출시하는 판매전략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되었다면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후 타인이 모방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귀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에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직접 침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경고장을 보낼 때는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기재하여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19 디자인을 양도받아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KEYWORD 디자인 양도, 굿즈, 상품, IP커머스

광주

사례경과

창작자의 디자인을 양도받아 굿즈 상품을 제작하는 IP 커머스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창작자의 굿즈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창작자가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창작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카피했을 경우 카피한 저작물로 인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면책조항 등을 두어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작자와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IP 커머스 서비스 출시 시 판매를 위한 폰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폰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창작물이므로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폰트의 저작물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용하신 폰트가 '폰트 이미지'인지 '폰트 프로그램'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폰트 자체가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20 모든 상표를 출원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KEYWORD 창업, 상표출원

광주

사례경과

주얼리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 예비창업자입니다. 현재 창업사관학교 교육을 받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등록과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도형상표와 글꼴을 변형시켜 디자인을 한 문자 상표 두가지와 기본 글꼴로 상호명을 표기한 한가지, 총 세개의 상표가 있는데 초기자금에 넉넉하지 않아서 세개를 모두 한번에 등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상표를 우선 등록하면 좋을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변리사(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절차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제출에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변리사를 통해 출원할 경우에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이 상표를 구성하는 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하고자 하는 표장을 상품류를 특정하여 출원해야 하며, 상품류를 특정하는 방법은 특허청 사이트에서 분류코드 조회 등을 통해 선정하거나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종 업계에 있는 상표를 검색한 후 해당 상표가 어떤 상품류를 선택하여 출원했는지 참고하여 상품류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하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등의 통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상품류를 지정하여 상표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출원공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선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상표나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고 상품도 동일/유사하지 않다면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품의 유사여부와 상표의 유사여부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상표를 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33류와 40류 2개류에 상표 출원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1 타 업체가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KEYWORD 모방, 디자인 템플릿, 저작권 침해

광주

사례경과

타 업체가 당사의 쇼핑물 디자인 템플릿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쇼핑물 디자인 템플릿의 경우 UI 또는 GUI로써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빠른 디자인 출원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까지 판매된 디자인 템플릿에 대한 보호는 어렵고,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등록 전까지는 권리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나,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경쟁업체의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2 우선심사제도와 디자인권 공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KEYWORD 우선심사제도, 디자인권 공유

광주

사례경과

디자인 우선심사제도와 디자인권 공유 시 유의해야 할 법률적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우선심사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청 심사관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심사 결정서를 약 1개월 이내에 발송하고, 우선심사결정서의 발송일부터 2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통상적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본인이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자인권 공유 시 법률 관계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 제39조(공동출원), 제96(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로 규정합니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권리의 사용행위는 공유자 각각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권리의 처분행위(양도, 실시권 설정)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3 간판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KEYWORD 간판 디자인, 저작권

광주

사례경과

간판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저작권법 제2조, 제6조에 따라 간판의 구성 형식이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대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카피하여 사용한 간판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법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제작한 간판 디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간판의 구성 형식이나 소재의 선택, 배열 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침해 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의 판단을 별도로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판 디자인의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경고장을 송부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고장 송부와 별도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판이나 소송 등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4 캐릭터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KEYWORD 캐릭터,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광주

사례경과

제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콘텐츠를 디자인,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 심사 중이지만 상표권, 디자인 특허 등을 출원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을 통해 보호받는 것 이외에도 상표나 디자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해서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상품의 경우 캐릭터가 적용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난 후 상품류를 지정해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상표에 대해 하나의 상품류를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어 상품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캐릭터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특정해서 출원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호랑이 캐릭터가 그려진 '인형', 호랑이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 등으로 그 물품을 특정해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25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KEYWORD 공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광주

사례경과

2019년 졸업작품전에 출품한 작품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귀하가 의뢰하신 제품은 2019년도 졸업작품전에서 이미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1항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지된 날 기준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12개월이 경과되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출원한 디자인은 공지된 날 기준 12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지금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창작자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지하기 전에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적으로 최초 공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공지 행위를 구제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 출원의 경우 적용되며 중국출원의 경우 이와 같은 공지행위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지행위 전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6 색상, 형태, 무늬에 대한 디자인 특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KEYWORD 디자인 특허의 범위, 색상, 형태, 무늬

광주

사례경과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 색상, 형태, 무늬에 대한 특허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작한 물품에 형상이나 모양이 구비되어 있다면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며,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디자인의 구성이 됩니다.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 1)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의 전체로서 판단합니다.
- 2)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3)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의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방법

-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 2)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확대경, 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함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다면 비유사디자인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합니다.

27 해외 수출 상품의 상표 및 디자인 권리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KEYWORD 수출, 해외상표출원

강원

사례경과

당사는 화장품 제조업체로,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지재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 국가에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국 독립의 원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표장을 해당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상표권에 '각국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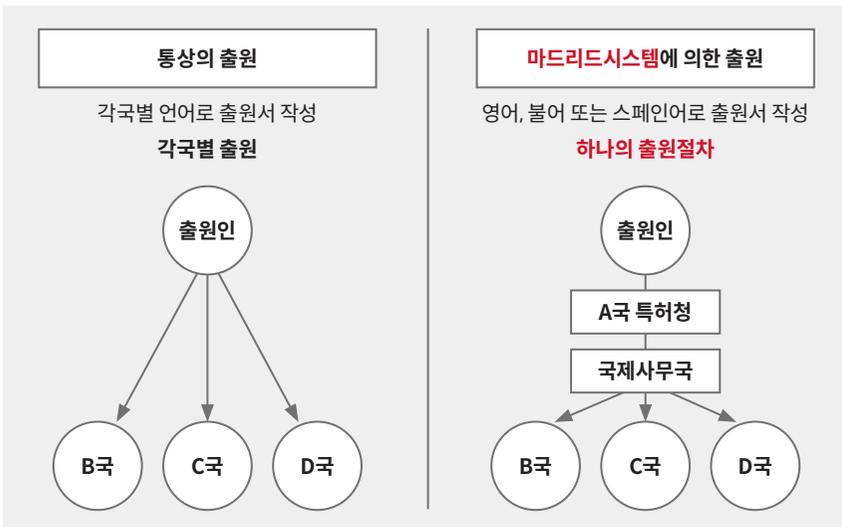
1. 우선권 제도

우선권 제도란 1국에 먼저 출원하고 나서 2국에 출원할때, 2국 출원일을 1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2. 상표검색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 외국별 검색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가별 상표등록 조건에 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등록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의 전문가들에 의뢰하여 검색을 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해외상표출원제도*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해외상표출원 > 마드리드 소개 > 마드리드시스템

28 홍보 애니메이션도 디자인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KEYWORD 영상, 애니메이션, 저작권

강원

사례경과

캐릭터 범이&곰이로 홍보 애니메이션을 기획 및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2차 저작물 등으로 디자인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홍보 캐릭터를 사용하여 만든 홍보 애니메이션은 2차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되며, 사후 70년까지 존속하게 되지만 추후 분쟁 발생시 저작권자를 입증하기 용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9 제품을 출원하는 것과 제품의 드로잉을 출원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나요?

KEYWORD 드로잉, 디자인출원

강원

사례경과

제품과 드로잉의 지식재산권 출원 차이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실제 제품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드로잉만 있는 경우에 지식재산권 출원은 진행절차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권리 보호범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제품 또는 드로잉 모두 출원대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드로잉이 있다면 이 드로잉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서 차이는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출원 명세서상의 도면을 실제 제품의 촬영한 사진으로 하거나 또는 드로잉의 도면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으며 권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작권 등록신청도 유사합니다. 특히 출원 시 실제제품의 유무는 발명의 이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절차나 권리측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30 UI/UX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을 출원하고 싶습니다.

KEYWORD UI/UX, 디자인출원

강원

사례경과

정신건강 UI/UX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브랜딩(로고) 및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고 합니다. 출원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자문의견

UI/UX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브랜딩(로고) 및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등록,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는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는 경우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처음 공표 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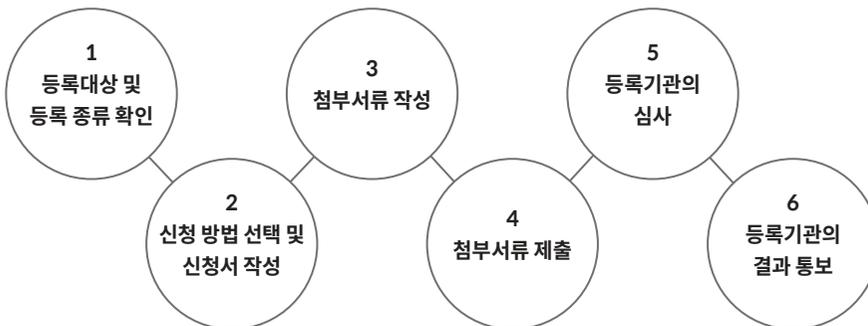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완성이 있기만 하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없이도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 10조 2항). 이러한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직,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저작물의 공시에 따른 간접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추정력 / 대항력 / 보호기간연장 /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저작권등록의 신청절차



31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형태가 비슷합니다. 디자인권리 보호를 받기 위하여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KEYWORD 제품, 미니멀리즘, 디자인권

강원

사례경과

제품분야 대부분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형태들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단순한 제품 디자인의 경우(예>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버튼이 없는 사각 박스 형태) 디자인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신규하고, 창작적이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 등록출원이 될 경우 해당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20년간 독점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휴대폰케이스, 가전제품 등의 물품의 디자인이 미니멀리즘의 트렌드에 맞춰 단순화되는 경우에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 하셨습니다.

신규성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공지된 디자인과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차이점이 있는 경우라도 그 차이점을 포함하여 전체 디자인이 이전의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형상을 단순화하는 경우에도, 대비되는 공지디자인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그 차이점을 포함하여 전체 디자인을 비교하였을 때 다른 미감을 가지는 경우에는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전의 제품의 형상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고, 전체를 비교하여 다른미감을 일으키는 정도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서 제품이 출시, 공개 되기 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2 디자인출원과 특허 진행 시 디자인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KEYWORD 특허, 디자인출원, 권리보호확장

강원

사례경과

디자인출원과 특허출원 진행 시 디자인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특허출원은 기술내용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디자인출원은 외관의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가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출원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문구에 의하여 권리범위의 독점이 형성되며,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출원서에 기재된 도면에 의하여 유사범위까지 독점범위가 형성됩니다.

33 심사 대기 중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KEYWORD 상표권침해

부산

사례경과

상표권을 출원한 후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1주일전, 타 업체에서 같은 상표 및 유사한 로고를 가지고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상표권은 아직 심사 대기 상태라 상대 업체에 판매 중지(내용증명 등)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우선심사 신청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판매중인 상품을 일부 변형하여 디자인특허를 진행하려 합니다. 디자인 특허가 가능한 부분 및 타 업체에서 내어 놓은 디자인특허 부분 중 피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문의견

상표출원 후 등록여부까지 통상적으로 1년정도 소요되며, 출원한 지 8개월 가량 지난 점을 감안하면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우선심사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 출원공고결정이 나기 전이라 내용증명으로 경고를 하기 힘든 점이 있지만 만약 경고를 하고싶다면, 출원 공고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출원 사실 사본을 통해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가 출원한 상표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소급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거절이 될 경우에 소급해서 소멸되는 해제 조건부 권리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숙지해서 경고장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34 시중에 판매 중인 DIY 키트와 같은 구성으로 판매 시 문제가 될까요?

KEYWORD 지식재산권 침해

부산

사례경과

도안을 프린팅한 전사지와 머그컵을 DIY 키트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도안은 창작하였으나 해당 제품 구성은 이미 타 판매점에서 판매중인데,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머그컵, 전사지는 시중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므로 특허권(저작권) 소진이론에 의해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명 저작권자의 도안을 사용하거나, 머그컵에 도안을 부착할 때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대량생산 한다면 관련 특허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도안을 전사지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람이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5 캐릭터 개발 과업 종료 후 수정 및 활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KEYWORD 캐릭터, 저작권, 디자인 권리

부산

사례경과

A기관의 사업을 위한 캐릭터를 디자인했습니다.

과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을 타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캐릭터를 수정, 활용하여 A기관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 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이나 도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캐릭터는 지식재산권으로 등재를 해두었습니다.

자문의견

귀하가 디자인한 캐릭터는 현재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태로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동일 등록 물품에 적용시에만 침해가 성립하므로 동종 물품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기관이 발주한 업무의 내용으로 캐릭터를 제작하였으므로 타 디자인 업체의 수정행위는 불법적이지 않다는 소견입니다. 다만 제삼자의 사용은 귀하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A기관 이외의 업체에서 사용 시 디자인 권리에 기한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36 서비스 오픈 전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KEYWORD 저작권 침해, 계약 검토

부산

사례경과

비대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오픈 전 폰트, 저작권, 디자인 등의 도용 가능성과, 계약 관련 전반에 법률 자문단의 검토를 지원 받고자 합니다.

1. 웹서비스 폰트 / 2. 웹디자인 저작권(개발자가 개인자격으로 이미지 제공처 가입, 무료 이미지 사용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 / 3. 고객 과 사업자간 표준 계약서 제공 / 4. 하자 보증 연계시 문제점 여부 / 5. 기타 디자인 자문 요청

자문의견

저작권 관련

비대면 플랫폼 화면이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인 용도의 사용의 경우에는 화면의 이미지나 글꼴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듯 하나 회사 차원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거나 여의치 않다면(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려고 해도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존속기간이 사후 70년인 저작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플랫폼 개발 관련

플랫폼을 자체 개발이 아닌 외주로 개발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와의 계약체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형식에 맞게 작성을 하되, 용역계약의 내용 이행 및 사후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분쟁발생시의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히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된 플랫폼의 내용이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로서 출원 및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인 구체화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플랫폼의 디자인은 입체가 아닌 평면의 형태로 그 구성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등의 자문 관련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검수에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 양쪽의 자문을 받는 것을 조언하겠습니다.

37 상표권 등록 시 유사상표 확인 및 법적 권리 확보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KEYWORD 상표권등록, 유사상표

부산

사례경과

반려로봇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네이밍과 로고 등이 상표로 사용함에 있어 타당한지, 선등록 또는 선사용되고 있는 상표들 중 유사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표법에서 정한 법적 권리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품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록 절차 및 차후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하고자 합니다.

자문의견

유사 상표의 존재는 상품이 유사하며 상표 표장이 유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표장이 등록된 경우입니다.

상표의 출원전에 유사 상표의 존재를 검색할 수 있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사 상표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제삼자의 유사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다면 현재 사용중인 상표는 제삼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제삼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권 사용 중지, 상표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 등을 소구할 수 있습니다.

38 상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KEYWORD 상표출원, 절차

부산

사례경과

골프공 라이너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골프공 라이너를 판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상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상표출원은 특허청에 상표견본 및 지정상품 등을 지정하여 온라인 등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 상표출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변리사)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대응방법을 결정하게 되므로 현재는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규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건의 경우에는 상표등록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1) 자타상품식별력 유무, 2) 유사한 선행상표의 존재 유무 등의 조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출원을 희망한 귀사의 상표를 검토해 본 결과, 매우 비슷한 선행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상표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니 출원에 참고 바랍니다.

출원 형태 관련

상표출원시 영문, 한글, 영문/한글병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식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특정상표만 출원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하는 상표를 기준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관납료 뿐으로, 1건의 상표출원을 기준으로 62,000원입니다.

영문상표와 한글상표 등록 사이에서 고민하신다면, 가급적 두 상표 모두 출원을 진행하여 보다 넓게 상표권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드리겠습니다.

출원 진행 관련

상표 jpg 파일과 지정상품(몇 류의 어떠한 지정상품인지 여부)을 지정하여 특허로의 서식작성기를 통해 상표출원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의 경우에는 골프공 라이너 이외에 관련된 골프용품들을 동일한 류 내에서는 20개까지 지정을 하더라도 비용이 동일합니다. 가능한 최대로 지정하여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정상품을 니스분류표에 수록되어 있는 상품으로 지정하면 관납료가 56,000원으로 인하므로, 가급적 니스분류표에 있는 지정상품을 최대한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9 영문상표 침해 사실 통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KEYWORD 상표출원, 유사상표 분쟁

부산

사례경과

당사는 사무실 간식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7월 출원한 당사의 상표가 미국 회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출원을 취하하고, 본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법률사무소 변리사에게 이메일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엄연히 스펠링이 다른데 상표에 크라운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취하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측 변리사는 7일 내 회신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상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통상적으로 상표출원 이후에 출원공고결정을 받았다면 심사 결과 등록여부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출원공고결정 이후 두 달, 제삼자 등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 동안 별 다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을 통보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귀사는 상표를 사용 중이고, 타사의 영문 상표는 이미 등록 중이어서 상표의 사용 중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귀사의 한글상표는 제9류에, 영문상표는 제35류 및 제39류에 출원 중으로 아직 등록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사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문상표에 대한 것으로 한글상표의 출원은 그대로 두면 될 것이나, 영문상표의 상표출원을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신청에 따라 대응하여 다투볼 것인지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사가 보낸 경고장의 사항은 **1)상표의 출원에 대한 사항, 2)상표의 사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별개로 혹은 함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 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침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리 권한은 변호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귀사의 상표출원에 대한 타사의 이의신청으로 상표거절되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사용중인 상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0 아이디어 도용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KEYWORD 아이디어 도용 방지, 사업아이템 보호

부산

사례경과

당사는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자연물 플랜테리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쿠아리움' 과 '플랜테리어' 서비스에 '미디어아트설치' 와 '홈스타일링 구독' 서비스를 융합하여 전문관리 멤버십 구독 시스템을 개업 하려합니다.

상호 등록이 가능한지, 예술분야로서 서비스플랫폼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력사에 보낸 협력제안이 유출되어 이미 타 아쿠아리움에서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전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상호도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가 상표등록으로 보호받는다든 것은 그 명칭 자체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 분야(상표법에 의한 지정상품)에 관해서 특정 명칭을 보호받는다든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등록의 경우 먼저 자신의 주력 상품(또는 주력 서비스)가 상표법상 의 어떤 지정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지정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제삼자의 유사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다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제삼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의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아이템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저작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하므로, 신규 사업아이템이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아이템의 제시에 그친다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온라인상에서 수행되고, 온라인상에서의 사업 수행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플랫폼 자체는 특허로서 보호될 수 없으며, 온라인상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방법이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은 특정 제품의 형태에 관하여 권리를 부여하므로, 새로운 사업아이템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다만 새로운 사업아이템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 형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새로운 사업아이템 자체에 대한 등록은 불가능하나,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지칭하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새로운 사업아이템 자체에 대한 보호는 불가능하나,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저작물이 있다면 그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보호할 수 있는 각각의 권리가 존재하나, 사업아이템 자체로 보호받기가 어려워, 제삼자의 사업 모방을 방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41 디자인 권리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합니다.

KEYWORD 디자인 도용, 저작권 침해

부산

사례경과

당사 상품 디자인을 도용한 상품을 발견하여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 회신이 없고 각종 유통처에는 해당상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침해품의 판매 중단 및 법적 조치에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귀사가 보낸 1차 내용증명 경고문을 검토하고 문구를 수정하여 2차 내용증명을 침해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42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제작한 일러스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KEYWORD 저작물 사용계약

서울

사례경과

직원이 당사 입사 전에 작업한 일러스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직기간 중 작업했다면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나, 입사 전에 그린 일러스트의 사용권에 대한 법적 보호 절차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직원이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적, 물적 지원(기획) 하에 제작한 일러스트가 아니라면, 귀사는 당해 일러스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외부에서 일러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보유자와 당해 일러스트의 사용범위, 가격, 제삼자 권한 침해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작업한 일러스트에 대해 귀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면 다른 직원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귀사도 직원의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증거가 없는 한 다른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43 의류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관련 서류 검토를 요청합니다.

KEYWORD 의류 디자인, 특허 출원

부산

사례경과

항균소재 스포츠 의류 개발과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에 대한 서류 검토와 의류 분야 특허의 필요성 및 진행 방법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특허권은 출원 이후 특허권의 발생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도면,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효과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특허명세서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귀사의 아이템은 의류에 대한 것으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의류의 재질에 대한 내용, 의류의 제조공법 등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기능성이 추가된 의류로 특허출원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류의 소재나 성분, 배합비, 의류의 제조공정 등 기존의 의류와는 차별화된 기능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류를 제작하는 장비나 장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허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능성을 가미한 의류를 제조하는지에 해당되는 공정에 대한 설명 혹은 의류에 들어가는 재료적인 특징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시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 도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조공정에 대한 것이라면 도면이 요구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속옷 및 잠옷 등을 제작하는 귀사의 경우 특허권 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의 중요성도 크다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안내해 드린 디자인출원 및 상표출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시에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총 7개의 도면이 준비되어야 하며 제품의 명칭, 용도, 재질 등의 기능적인 설명도 필요합니다. (도면이 없고 제품만 존재하는 경우 실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등록 여부의 결정 까지 약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등록이후엔 디자인권이 발생되며, 디자인권은 주기적으로 연차료 납부를 통해 20년까지 존속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통해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해 이미 안내해 드린 상표출원의 절차, 비용 및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가문의 바랍니다.

44 레고 피규어의 형태에 얼굴 모양, 옷, 모자 등을 리디자인하여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KEYWORD 유사디자인, 2차 저작물, 레고

서울

사례경과

당사는 기존 레고 피규어의 형태에서 얼굴 모양(생김새), 몸에 사용된 옷(상의, 하의), 모자(기존 레고에서 사용되지 않은 형태)를 리디자인하여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제작된 신규 캐릭터에 대하여 레고가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들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신규 캐릭터에 대하여 디자인 저작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문의견

레고사가 어떠한 지식재산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레고 피규어와 유사한 피규어를 개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레고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귀사가 레고와 유사한 피규어를 개발한다면 이는 레고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레고사가 귀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레고 피규어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는 디자인권, 저작권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권리가 있습니다. 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권리자(레고사)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상품을 제조, 유통(수입),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자, 유통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레고 피규어에 대해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명백하지만, 나머지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옥스퍼드사에서 레고 피규어를 살짝 변형한 피규어를 제작한 후 테마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레고사가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 레고사에 나머지 권리도 부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나머지 권리가 인정된다면 귀사는 레고사로부터 해당 권리에 대한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45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며 작업한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KEYWORD 무급 인턴, 디자인 저작권

서울

사례경과

NGO단체에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며 그림책의 이야기, 이미지컷, 가제본 등을 직접 작업하였습니다. 해당 단체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화상회의로 작업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으나 곧 국내에서 해당 그림책의 판매를 계획 중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인턴계약 종료 후 해당 그림책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저작권법 관련 규정 및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저작권법 제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즉 법인 등과 실제 저작자 사이에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12.1. 선고 2016나2020914판결).

귀하가 제작한 해당 그림책에 관한 미술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권은 귀하에게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저작권은 상대방에 귀속된다 할 것인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작업은 상대방에 의해 업무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닌 본인의 창작에 의해 이루어졌고, 작업에 있어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는 없었던 점, 상대방에 의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고용관계 내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해당 작업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46 디자인발명의 사내 보상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KEYWORD 인하우스 디자이너, 직무발명

서울

사례경과

국내 대규모 식품기업에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수년 간 근무하여 다양한 식품 용기를 디자인하였으며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디자인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 특허는 사내 보상규정이 있으나 디자인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귀하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하면 그 직무에 관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①회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②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③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 시 회사가 부담한 변호사보수와 기타 소송비용을 귀하가 부담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패소 시 부담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청구금액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12.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	0.5%

*일부 승소시에는 양측 선임 변호사보수를 위와 같이 산정한 후 판결문에서 정한 부담비율로 부담합니다.

47 프리랜서에게 의뢰하여 받은 디자인 결과물이 무단도용한 디자인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KEYWORD 지식재산권 침해

경기

사례경과

국내 최대 프리랜서 아웃소싱 플랫폼에서 디자인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물을 인쇄, 제작하여 판매해왔습니다. 해당 디자인을 이미지 기반 SNS에 게시하려고 보니 동일한 디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디자이너가 외국의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하여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로 속여 전달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문의견

개발을 의뢰받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계약위반이자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디자이너와 해당 아웃소싱 플랫폼사를 상대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용역비와 제작비, 그리고 기타 해당 지식재산권자가 청구하는 손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8 직접 촬영한 건물, 거리, 골목 등의 사진으로 책을 출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KEYWORD 사진, 출판, 저작권, 개인정보

경기

사례경과

직접 촬영한 건물, 대문, 거리, 골목 사진으로 구성된 책을 제작 중입니다.

사진에 인물은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사진에는 건물의 번지수 또는 집주인의 명패가 찍혀있는데, 이대로 책을 출판할 경우 어떠한 침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촬영한 사진의 피사체가 독창성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촬영한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진에 사람이 찍힌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 여지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촬영한 사진에 건물 외관 뿐만 아니라 건물 번지수, 명패 등이 나타나 있고,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귀하가 촬영한 건물 외관, 번지수, 명패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이를 출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계약범위 #계약불이행 #계약서검토 #도용 #라이선스계약 #미지급
#부도 #비용지급 #선공개 #손해배상 #시안비용 #어음회수 #저작권
#하자 #해외분쟁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01 계약금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폐업 했습니다. 남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KEYWORD 대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

대구

사례경과

2020년 12월 21일, 클라이언트가 운영중인 점포의 리브랜딩 디자인 용역을 의뢰 받았습니다. 용역비의 50%를 지급받고, 진행 중 클라이언트의 추가 디자인 요청이 있었고, 2021년 1월 26일 추가된 요청을 포함한 모든 디자인 작업을 완료하고 원본파일을 제외한 디자인 결과물 모두를 전달했습니다. 잔금 지급과 원본파일 전달만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클라이언트는 점포를 폐업했고 그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 중인 현재도 클라이언트는 답변서와 함께 계속해서 대금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추가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상담 신청합니다.

자문의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 이외의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은 어렵습니다.

용역비를 청구함에 있어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견적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용역결과물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 아직 계약 전인데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선공개를 요청합니다.

KEYWORD 계약, 계약 전 선공개

대전

사례경과

계약 전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디자인을 선공개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한 후에 공개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을 보낼 때 당해 디자인이 귀사에서 창작하여 공급한 것이라는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03 당사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디자인 비용 지급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KEYWORD 아이디어 도용, 비용 지급

충남

사례경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 받아 실측과 아이디어 등의 디자인 작업을 계약 체결 없이 진행했습니다. 인허가 변경과 시공의 높은 난이도 등의 문제로 당사에서 시공을 거절했는데 이후 시공 결과에 당사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 등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디자인 도용을 문의했으나 상대측 아이디어라는 주장과 시공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문의견

계약서나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작성한 것이 없어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사실(디자인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입증에 어렵고, 입증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액(손해배상액) 입증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니 소송의 실익 여부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4 디자인 결과물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KEYWORD 계약 범위, 저작권

대전

사례경과

A사와 캐릭터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정 상품에만 사용하기로 상호 협의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지적재산권 포함)은 A사에 귀속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캐릭터 디자인을 특정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에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자문의견

계약서 상 캐릭터는 일정 범위에만 사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점과 상호간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무단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서 접근 가능합니다.

만약 A사가 디자인 등록을 하였다면 실질적인 보호 수단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05 거래업체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미수금 어음의 회수 방안은 무엇인가요?

KEYWORD 부도, 어음 회수

광주

사례경과

거래업체 A가 부도처리 되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밀린 어음의 회수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귀하의 거래업체인 A는 2021.00.00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A에 대한 법인회생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회생채권신고기간은 현재 도과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신고된 A의 채권자는 0,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3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신고기간 내 채권자에 대한 시부인을 먼저 하는 것이므로 하루 속히 채권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지원금으로 책자를 제작하는데 직접 그림을 그려 사용했습니다. 해당 그림을 영리목적의 다른 책자에 사용해도 되나요?

KEYWORD 일러스트레이션, 저작권, 계약

강원

사례경과

지원금으로 비매품의 책자를 제작하는데 직접 일러스트를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해당 일러스트를 영리목적의 다른 책자에 수록해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비용을 지원 받을 때의 저작권 양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지원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7 납품된 인쇄물이 의뢰한 것과 다릅니다. 제작비 환불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KEYWORD 계약 불이행, 환불, 손해배상

강원

사례경과

10개월이 경과하여 납품된 인쇄물이 의뢰한 색상과 상이하여 사용이 불가하며 요청했던 수정 사항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작비 환불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이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상대인의 환불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하여 우선 확인한 이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한 증빙자료(문자 대화내용)에 제품 하자(요청한 디자인 파일과 출력물의 색상이 상이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하여는 수정요청이 5월에 있었으며, 10월 제품을 수령한 점을 감안할 때 상대방측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기간이 지연된 사안에 대하여는

- ① 약정된 공급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② 진행된 문자 대화내용을 감안할 때 이를 귀하가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기일 지연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방안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민사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승소에 따른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및 민사 조정신청 등의 간소한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8 상표 및 캐릭터 사용에 대한 계약조항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 사용을 거절하는 문서를 보내고 싶습니다.

KEYWORD 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계약서 검토

강원

사례경과

동종업자인 상대인과 당사가 보유중인 상표의 상표권 및 캐릭터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 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면밀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독소조항을 제거, 개선하여 당사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문의합니다.

자문의견

계약서 일부

제5조 [이용허락의 대가]

(1)을은 갑에게 캐릭터 상품화의 이용허락의 대가로서 최초 년도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후 각 년도에 대해서는 각 전 년도의 말일까지 아래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연간 이용료를 갑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간이용료는 '을의 해당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의 매출 × 지정퍼센트' 또는 '갑과 을이 협약한 정액'을 따르기로 한다.

사용대가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용계약이므로, 예시로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이용료는 1천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상기 연간이용료는 본 계약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연간허락 제조수량이라 함은 최저책임 제조수량을 의미한다.

지정상품의 _____ 가격 × _____ 퍼센트 × 연간허락 제조수량 _____ = _____

최고장 일부

귀사는 협의대상 목적물인 캐릭터의 저작권 및 상표권에 대하여 사용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최고장을 받은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본 최고장에 따라 계약협의를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2주가 종료하는 그 다음날로부터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발신인의 저작권 및 상표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9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낙찰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KEYWORD 대금지급, 계약 불이행

부산

사례경과

의뢰인과 A사 입찰 시 낙찰금액의 1.2%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 후, 우리 디자인으로 의뢰인이 낙찰되었으나, 입찰 변경 고시로 인해 계약기간을 넘긴 후 낙찰 결정이 되어 계약이 무효라며 낙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의견

귀사는 사업 지연에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양 당사자가 계약 해제 사실이 없으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 인바, 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낙찰금 1.2%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를 다툼과 동시에 계약 불이행으로 귀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KEYWORD 계약서 검토

부산

사례경과

현재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한달에 2-3개 정도의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CN에서 소속 제안이 들어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계약내용에 부당한 조항은 없는지, 특히 제 8조부터 제 10조까지가 저작권법 상 문제가 없는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귀하가 작성하려는 계약서는 가수 등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는 표준약관으로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에 특화된 계약서는 아니나 표준약관의 성질상 불공정 조항은 대부분 배제된 것이므로 크리에이터 전속계약으로 전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10조에서 계약기간 중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가 계약기간 이후에 수익을 내는 경우 그 수익의 분배와 관련한 조항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정할 것을 조언하겠습니다.

11 디자인한 제품의 개발 및 양산비를 제조사에서 부담하는 협업 형태의 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KEYWORD 라이선스 계약, 디자인권리보호

서울

사례경과

템블러를 활용하여 분말제품을 섞어 마실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한 상태입니다. 개인 신분으로 제품 양산까지의 비용이 부담되어 기존 템블러 제조사와 협업 형태로써, 개발 및 양산비를 제조사에서 부담하고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며 계약에서는 반드시 삽입이 강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률이 금하는 내용만 삽입되지 않으면 모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중에서 특정 물품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따위를 보유한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계약을 라이선스계약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템블러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하였고, 설사 출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므로 그 디자인에 관하여 템블러 제조사와 개발 및 양산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일종의 라이선스계약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발비는 귀하가 부담하고 양산비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방법과 개발 및 양산비를 귀하가 모두 부담하고 제조사는 임가공비만 부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방식도 비율로 할 수 있고, 정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율로 할 경우 판매수량 또는 판매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아예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액수를 받고 제조사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개발용역에서 용역비를 성과보수로 받기로 하는 경우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권리보호' 메뉴에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12 디자인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KEYWORD 결과물의 하자과 손해배상

서울

사례경과

제품 카달로그의 디자인을 클라이언트에게 검수 받은 후 인쇄소에 파일을 전달할 때 실수로 다른 파일을 넘겨 목차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이후에 본문에도 추가적으로 오타가 발견되었고 클라이언트의 일정이 시급한 이유로 새로 재인쇄해 납품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재인쇄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65%를 당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나 해당 금액이 원 용역비의 2.4배 정도에 달하며 검수한 클라이언트의 귀책도 있어 과한 요구로 보여 지는데, 클라이언트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문의견

인쇄물의 오류는 귀사와 고객의 과실이 겹쳐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측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부담비율이 얼마인지는 서로 견해차가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즉,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에는 검수 후에도 하자(오류)가 발견될 경우 귀사가 책임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계약조항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면 약관으로 간주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는 바, 위 조항 역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고객과 최대한 협상하여 부담비율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의 부담 때문에 좀 더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말하는 강제 집행은 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압류는 귀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귀사 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처분을 금하는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가압류 신청일로부터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13 디자인을 제공한 후 여러 이유를 대며 비용 지급을 미룹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KEYWORD 디자인 시안, 용역 비용

서울

사례경과

출판사에 표지/본문디자인을 제공한 후 고객이 일부 오류를 지적하며 더 이상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용역비 또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 시안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귀하는 디자인 시안 용역을 제공하기에 앞서, 디자인 표지, 본문 디자인 용역비, 수정횟수 등을 명시하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작업비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하였고, 작업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귀하는 디자인 표지, 본문 시안 등을 작업하여 상대방에게 보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확인한 후 첫 번째 시안이 마음에 든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디자인 시안 작업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상호 합의된 바에 따른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대방에게 디자인 시안 작업 등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디자인 시안 작업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 한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전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진행되며, 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조정안(접수 후 3개월 안으로 제시)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4 견적서만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클라이언트와 연락이 두절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KEYWORD 용역비 미지급

서울

사례경과

제품 홍보 웹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용역범위, 및 대금이 기재된 견적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견적서 상 A, B두개의 디자인을 작업하기로 했으나 A디자인 작업 후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어, 이를 두고 용역 미완성으로 보고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웹페이지 디자인 제작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 범위 및 용역대금은 용역계약의 중요한 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는 용역범위, 용역대금이 기재된 견적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디자인 제작을 진행하도록 한 것을 웹디자인 제작 용역계약에 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웹디자인 제작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A, B 디자인으로 나누어 견적서를 제시하였고, A디자인에 대해서는 작업 완료 후 수정까지 마친 상태지만, 수정횟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상대방이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승인하는 듯한 언행이 없었다면, A디자인에 대한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는 A디자인 작업의 완성 정도를 입증하여 이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 해외 고객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역비의 1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KEYWORD 해외 기업과의 분쟁, 권리구제방안

서울

사례경과

독일 소재 기업과 전기차 디자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주간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여 고객에 제공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역비의 1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의 50%를 민사소송으로 지급받고 싶는데, 법률구조공단에 해외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토지관할권의 가장 일반적·보편적 발생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대법원 2019.6.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한편,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법률구조법 제22조 참조), 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을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법원, 국사법원, 헌법재판소가 법원조직법 제2조, 군사법원법 제2조 및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한다) 및 행정심판의 대리, 변호, 보조 등 지원사건'을 법률구조신청사건으로 정의하고,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법률구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3조, 제5조 등 참조)

국제사법 관련 규정에 의할 때,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은 독일 법원에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공단 내부 규정인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규정에 의할 때, 법률구조공단은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자 등에게만 법률구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독일 법원에 제소하게 되는 소송에 대해 지원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CI #PDF임베디드 #고소 #라이선스 #이용책임
#저작권 #침해 #폰트변형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당사의 CI가 폰트저작권 침해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CI, 대응방법

대구

사례경과

폰트회사 A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당사의 CI가 저작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서를 수신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의견

폰트 저작권 관련 문의와 답변 정리를 통한 저작권 분쟁의 이해

Q1. 폰트 또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저작물 보호의 대상인가요?

A1. 판례는 '폰트는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으나(대법원 94누 5632 판결), 폰트 파일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9다 23246 판결).

Q2. 한컴오피스 또는 폰트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문서를 영리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A2. 정식 구매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Q3. 폰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출판을 위해 복제, 인쇄 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3. 오프라인으로 결과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Q4.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로그 포스팅, PDF 저장, CI 등의 제작을 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 사항이되나요?

A4. 정품으로 구매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폰트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폰트 저작권자가 허락한 기능 이외의 행위는 저작권 또는 그 사용권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범위, 저작권자가 허락한 기능 이외의 행위에 CI 제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폰트가 적용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폰트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폰트를 이용한 CI 작업에 귀사가 폰트파일의 전송/복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직접 CI를 제작하며 폰트파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제3자가 CI를 제작하였으므로 귀사는 저작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제3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I를 제작하는 경우, 라이선스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사가 아니라 CI를 제작한 제3자의 의무로 귀사는 허락을 득해야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CI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책임은 CI를 제작한 제3자에게 있는 것이며, 해당 제3자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당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등의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저작권 침해 주장 또는 라이선스 요구 등의 경고장, 소송 등)에 대비해 디자인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사용 폰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를 요청합니다.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CI

대전

사례경과

2013년에 개발한 CI가 서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법성 여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해당 서체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지 여부도 의문이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권리를 가진 디자인 회사가 작성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3 폰트 변형 사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KEYWORD 폰트 변형, 저작권 침해

대전

사례경과

브로슈어 제작에 A서체를 사용하였는데 법률사무소에서 A서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문의견

서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자체에 하나의 독립적인 특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데 A서체는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도안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외형상 비슷한가 여부보다,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가, 사용했다면 소스코드가 동일한가, 단순교정이나 복사에 불과한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04 서체를 일러스트로 따라 그려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나요?

KEYWORD 폰트, 저작권침해, 대응방법

광주

사례경과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일러스트로 따라 그려서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저작권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창작물이므로 저작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은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귀하가 따라 그리기 방법으로 폰트 이미지를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현한 결과물이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현한 폰트 자체인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인지에 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만약 폰트 자체가 사용되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정당한 권원이 있는 다른 폰트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면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폰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따라 그리기 방식으로 폰트의 형태를 구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처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영업 방해 행위 중단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침해를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폰트 활용 CI 개발 후 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대응방안

KEYWORD 폰트 변형, 저작권 침해

부산

사례경과

서체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당사의 클라이언트에게 A서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연락을 취하고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당사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09년경 A서체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CI를 개발하였고, 작업을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미 2010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담당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법무법인에 당사의 연락처를 전달하였고, 서체 사용에 대한 해명 요구를 받았는데,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자문의견

서체 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 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되며, 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서체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서체 도안자체가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폰트 파일을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로드 받거나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의 입수 당시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적법한 입수 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단 복제가 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06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받은 포스터의 이미지와 폰트를 활용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강원

사례경과

A기관에서 제공된 포스터의 이미지와 폰트를 활용하여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포스터 제작 업체는 폐업 상태인데 폰트회사 법무팀으로부터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에 따른 사용료 지불 요청 받았습니다.

자문의견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저작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99다23246)입니다.

원칙적으로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타인이 사용한 폰트를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등)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폰트 파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당한 방법(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경우 등)으로 취득한 무료폰트 파일을 상업적으로 사용 시 저작권위반(복제권)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또한, 유료폰트로 전환된 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은 약관위반에 해당할 뿐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약관위반으로 인한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폰트 파일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폰트 파일을 부정하게 취득하여(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형사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본적으로 폰트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과도한 배상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폰트회사와 협상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07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이용하여 CI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CI, 라이선스

강원

사례경과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이용하여 CI를 제작, 사용했는데 폰트회사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자문의견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저작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99다23246)입니다.

원칙적으로 폰트 프로그램 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타인이 사용한 서체를 복사하여 사용한 경우 등)라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 내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 그림으로 저장(CI 등의 이미지 제작 포함), PDF 저장을 할 경우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면 한글과 컴퓨터에서 무료로 사용되는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이용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귀하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용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과도한 배상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배상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즉시 사용을 중단하기를 권하며 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권리주장(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협상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08 Mac용 폰트를 Window용으로 변환하여 사용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문제 문의합니다.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CI, 라이선스

강원

사례경과

10년전 구입한 Mac용 폰트를 IBM PC의 Window용으로 변환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폰트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나 폰트 도안 자체를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구매한 프로그램 설치 시 저장된 폰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Mac용으로 구입한 폰트 프로그램을 변환하여 다른 PC(Window용)에서 사용하였다면 저작물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10년전 구매한 폰트의 라이선스 규정이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시 첨부된 약관(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09 온라인에 게재한 PDF파일에 사용된 폰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PDF 임베디드, 라이선스

강원

사례경과

유료폰트를 구매하여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인쇄물을 제작하고 납품했습니다. 이후 클라이언트가 해당 인쇄물의 PDF파일을 온라인상에 게재하였습니다. 폰트업체의 법률대리인은 이 PDF 파일에 폰트가 저장(임베디드) 되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문의견

현재 유료폰트가 포함(임베디드)된 PDF파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명확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근거나 판례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유료폰트를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닌, 귀하로부터 납품받은 PDF파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것일 뿐이며 유료폰트 파일은 단순히 PDF문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독립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고 어렵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PDF파일 게재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 (부수적 복제)에 따른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유료폰트 구매 시 약관에 임베디드는 제외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약관(이용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 퇴사한 단기근로자가 사용했던 서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방법

경기

사례경과

단기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자인 용역을 수행한지 7년이 지난 시점에 온라인상의 해당 작업물을 캡처한 사진을 증거로 서체업체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디자인 결과물에 사용한 서체만으로 합의금을 제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7년 전 해당 근로자가 어떤 서체를 사용하였는지 자료나 PC도 남아 있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아 경찰에 출석하여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자문의견

귀사는 서체회사에게 저작권침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로, 서체 관련 저작권침해되는 서체 자체의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체파일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저작권침해죄의 공소시효(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불법 서체파일을 사용한 날로부터 7년이고,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저작권침해죄에 대하여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귀사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귀사는 합법적인 서체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귀사는 우선 위 용역결과물을 납품한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년을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1) 단기근로자가 용역을 수행하였고, 2) 귀사는 불법 서체파일인지 몰랐으며 3) 당시 사용하던 PC는 이미 폐기하여 불법 서체파일 사용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십시오. 귀사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소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불법 서체파일 사용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그 소멸시효는 서체회사가 손해(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위의 형사책임을 면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체회사와 적절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1 외주업체가 납품하여 사용중인 자사 홈페이지 상의 서체에 대한 비용을 서체업체가 청구합니다. 요구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KEYWORD 폰트, 저작권 침해, 외주 제작, 이용책임

경기

사례경과

외주업체에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외주업체가 제공한 그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의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돌연 서체업체에서 근 20여 년간 서체를 사용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에 홈페이지에 사용된 서체를 모두 변경할 예정인데, 그와 별개로 그동안 사용했던 서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자문의견

저작권법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체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1994.4.6.선고93구25075 판결)

대법원은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12.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서체파일에 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결론

상기 판례에 의할 때, 서체도안 자체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침해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주업체가 귀사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서체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외주업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사는 서체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비용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1인기업 #공휴일 #근로조건 #대체공휴일 #세무 #임
금체불 #초과근무 #최저임금 #취업규칙 #퇴직금 #휴가

노무 및 회계 관련



01 공휴일이 휴가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KEYWORD 노무, 공휴일, 휴가

대전

사례경과

1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공휴일이 휴가에 포함되나요?

자문의견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일에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휴가는 강제로 사용할 수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 하는 바,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02 최저임금과 퇴직 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KEYWORD 노무, 최저임금, 퇴직금

대전

사례경과

최저임금 기준 연봉지급 시 퇴직연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자문의견

연봉계약서 및 임금계약서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이와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액을 포함한 연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KEYWORD 노무, 대체공휴일

대전

사례경과

2022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와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대체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04 1인 기업의 회계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KEYWORD 회계, 1인 기업, 세무

강원

사례경과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부가가치세, 소득세)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기장에 의한 신고 또는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 매출규모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기장신고가 유리해 보이며, 지출증빙을 잘 갖추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되며 청첩장이나 부고통지 같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감면적용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05 1인 기업 운영 시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EYWORD 회계, 1인 기업, 세무

광주

사례경과

1인 기업 운영 시 매입·매출 관리 및 부가세 관리, 사업소득세 신고방법 등 회계 관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상반기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 내년 1월 25일)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내년 5월까지 홈텍스 등을 통해서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개인사업자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등 기타 개인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자 통장을 통해 재료비, 급여, 임차료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사용하고 사업 외 내용은 관리 목적상 다른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회사 규모의 확대에 직원 채용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활용을 추천합니다.

06 근무 중 법인명, 대표자, 사무실이 수차례 변경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KEYWORD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경기

사례경과

입사 후 법인명이 3번 변경되었고 실질적 대표가 처음에는 한국인이었지만 나중에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또 사무실도 옮겨졌습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었고 퇴직금도 받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노동법은 이른바 '실질'주의이므로 3개 회사 법인을 통해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경영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1인에 귀속됩니다.

이에 명목적인 사용자(상담일 현재 외국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보다 실질적인 경영주를 대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 실질 경영주가 확정되면 해당자에 대해서 근로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및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평균 임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07 당사의 근로계약서가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KEYWORD 노무, 근로조건, 근로시간 설계, 초과근무

서울

사례경과

매년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하는 디자인전문회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디자이너 업무 특성 상 특정 요일에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1개월 산정 단위로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간선택제와 관련된 문구를 추가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예시

[선택적근로시간제]

- ①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해 선택적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과장급 이상의 기획 및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일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08 2017년도에 작성한 당사의 취업규칙이 노동법률상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KEYWORD 노무, 근로조건, 취업규칙

강원

사례경과

회사의 취업규칙을 2017년도에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문의드립니다.

자문의견

취업규칙이 2017년도에 작성되어 이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개정된 내용,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내용,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대신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개인정보 #공유이미지 #공지예외주장제도 #도용
#디자인공지증명제도 #디자인보호 #무료이미지 #
이용약관 #저작권 #퇴직각서 #퇴직금 #포트폴리오



기타 및
특수사례



01 무료 이미지의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KEYWORD 무료 이미지, 공유 이미지, 저작권

대전

사례경과

디자인과 학생으로 평소 무료 이미지의 공유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의 구체적인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마다, 이미지마다 사용 범위가 다를 것이므로 그 사용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료 공유사이트에 올리는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용 시 이미지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이용이란 일반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칭하며 매우 광범위하여 사례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포트폴리오 도용의 대응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KEYWORD 포트폴리오, 도용, 디자인보호법

대전

사례경과

디자인 업체의 포트폴리오 도용의 대응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문의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본 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따라 구제,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서에 따라서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6조(과실의 추정)의 규정 준용을 계약서에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03 무료 이미지를 이용해 굿즈 등을 제작했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KEYWORD 무료 이미지, 공유 이미지, 저작권

대전

사례경과

디자인과 학생으로 평소 무료 이미지의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잡지와 브랜드 굿즈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 결과물에 저작권 문제 등은 없을지,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제작한 잡지나 굿즈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판매된 것도 없으며, 잡지에 광고 등이 기재되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의 포트폴리오나 취업 등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미지 사용시 사용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04 회사측의 강요로 서명한 퇴직각서를 무효화 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KEYWORD 퇴직각서, 퇴직금, 해결방법

대구

사례경과

퇴직각서에 서명을 해야만 퇴직금을 준다는 회사측의 협박으로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매우 불공정한 내용의 각서에 동의 서명을 했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각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의견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각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까지는 볼 수 없지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너무 과다하고, 각서를 작성한 경우도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퇴직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의 고소 또는 소송제기가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무효를 주장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 공지에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와 발명카페 운영 시 특허법상 유의점을 문의합니다.

KEYWORD 디자인공지증명제도, 공지에외적용주장제도, 보호방법

대구

사례경과

공지증명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발명카페나 웹사이트 등에서 자의로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한 경우에도 공지증명제도로 신규성을 보호 받고 특허등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 디자인권리보호의 공지증명제도와 특허청의 공지에외적용주장은 비슷해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의견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공지증명제도에 대하여

디자인공지(창작)증명제도는 디자인 창작물의 창작자와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작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므로 독점권 확보를 원하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지(창작)증명 완료 후 소정의 기간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증명 완료와 특허청에 디자인출원 사이에 제3자 모방디자인이 공개될 경우에 등록이 안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지에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점

공지에외적용주장제도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모두 적용이 되는 제도로, 출원인이 특허출원 전 또는 디자인출원 전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 하려는 발명 또는 제품디자인을 제품 판매,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특허청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에 출원인 스스로 공개한 발명 또는 제품디자인은 신규성 및 진보성(디자인의 경우 창작성) 판단에 활용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공지에외적용주장제도는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을 진행함에 있어 출원인이 출원전에 스스로 공개한 내용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디자인공지증명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자신의 창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고자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의 창작사실을 입증 받고자 할 경우에 활용가능한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자신의 발명 또는 창작물에 대하여 독점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하며, 독점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창작사실을 입증 받고자 한다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6 개발중인 교육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KEYWORD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부산

사례경과

개발중인 교육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타기업의 약관 등을 참고해 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완성도 있는 이용약관과 방침을 세우고자 합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시행할 때 고려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합니다.

자문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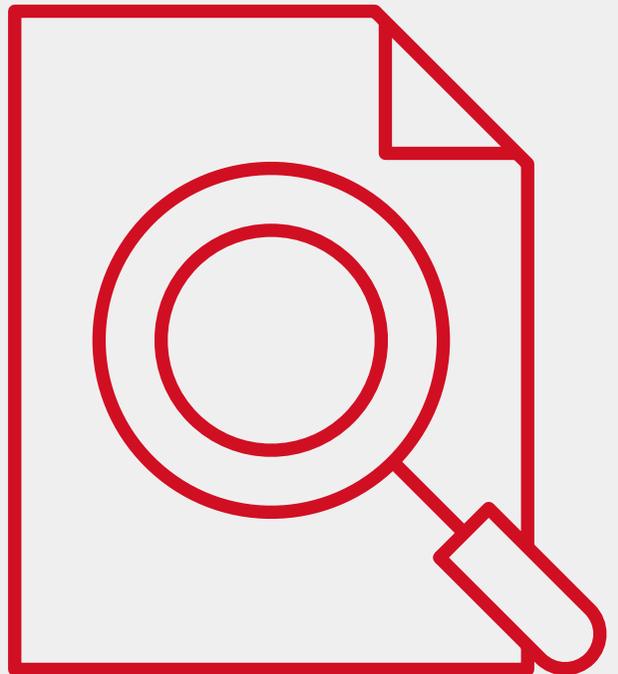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조항이 많아 정리가 필요한 점,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중첩적인 규제가 많아서 문구를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회원의 가입과 탈퇴 사유로 '사회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약관에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기타 물리적 기술적 사유로 회원가입을 승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 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9조 중 '기타 회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귀사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여 불공정할 가능성이 크고, 제16 조 중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는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임을 조언하겠습니다.

유형별 디자인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지식재산권 관련

01	자사 개발제품의 특허등록 가능여부와 보호방법을 문의합니다.	18
02	자사 화장품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가능할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19
03	자사 개발 캠핑용품의 디자인 출원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20
04	의뢰인의 디자인 원본파일 제공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21
05	신규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입니다.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22
06	디자인을 등록해 자사의 제품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23
07	개발한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24
08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25
09	자사의 신규브랜드가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26
10	자사의 신규브랜드가 출원이 가능할까요?	27
11	자사와 발주사 간의 디자인 저작권의 정확한 범위	28
12	책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한가요?	28
13	동일 브랜드, 캐릭터를 서로 다른 제품(의류, 식기 등)에 적용할 때 각각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하나요?	29
14	학교 강의 중 제작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30
15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30
16	놀이터 바닥 디자인, 도안을 보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1
17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1
18	유사제품이나 모방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2
19	디자인을 양도받아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33
20	모든 상표를 출원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4
21	타 업체가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35
22	우선심사제도와 디자인권 공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5
23	간판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36
24	캐릭터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7
25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38
26	색상, 형태, 무늬에 대한 디자인 특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9
27	해외 수출 상품의 상표 및 디자인 권리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40
28	홍보 애니메이션도 디자인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41
29	제품을 출원하는 것과 제품의 드로잉을 출원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나요?	41
30	UI/UX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을 출원하고 싶습니다.	42
31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형태가 비슷합니다. 디자인권리 보호를 받기 위하여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43

32	디자인출원과 특허 진행 시 디자인권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4
33	심사 대기 중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44
34	시중에 판매 중인 DIY 키트와 같은 구성으로 판매 시 문제가 될까요?	45
35	캐릭터 개발 과업 종료 후 수정 및 활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45
36	서비스 오픈 전에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6
37	상표권 등록 시 유사상표 확인 및 법적 권리 확보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47
38	상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48
39	영문상표 침해 사실 통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49
40	아이디어 도용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50
41	디자인 권리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합니다.	51
42	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제작한 일러스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1
43	의류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관련 서류 검토를 요청합니다.	52
44	레고 피규어의 형태에 얼굴 모양, 옷, 모자 등을 리디자인하여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고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53
45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며 작업한 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4
46	디자인발명의 사내 보상규정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55
47	프리랜서에게 의뢰하여 받은 디자인 결과물이 무단도용한 디자인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56
48	직접 촬영한 건물, 거리, 골목 등의 사진으로 책을 출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57

사례 찾아보기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01	계약금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폐업 했습니다. 남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0
02	아직 계약 전인데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선공개를 요청합니다.	60
03	당사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디자인 비용 지급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1
04	디자인 결과물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1
05	거래업체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미수금 어음의 회수 방안은 무엇인가요?	62
06	지원금으로 책자를 제작하는데 직접 그림을 그려 사용했습니다. 해당 그림을 영리목적의 다른 책자에 사용해도 되나요?	62

07	납품된 인쇄물이 의뢰한 것과 다릅니다. 제작비 환불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63
08	상표 및 캐릭터 사용에 대한 계약조항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 사용을 거절하는 문서를 보내고 싶습니다.	64
09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낙찰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5
10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65
11	디자인한 제품의 개발 및 양산비를 제조사에서 부담하는 협업 형태의 계약 체결이 가능할까요?	66
12	디자인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67
13	디자인을 제공한 후 여러 이유를 대며 비용 지급을 미룹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68
14	견적서만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클라이언트와 연락이 두절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69
15	해외 고객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용역비의 1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70

사례 찾아보기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당사의 CI가 폰트저작권 침해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74
02	사용 폰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를 요청합니다.	76
03	폰트 변형 사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76
04	서체를 일러스트로 따라 그려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나요?	77
05	폰트 활용 CI 개발 후 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 대응방안	78
06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받은 포스터의 이미지와 폰트를 활용해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79
07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이용하여 CI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80
08	Mac용 폰트를 Window용으로 변환하여 사용한 경우의 저작권 침해 문제 문의합니다.	81
09	온라인에 게재한 PDF파일에 사용된 폰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82
10	퇴사한 단기근로자가 사용했던 서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83
11	외주업체가 납품하여 사용중인 자사 홈페이지 상의 서체에 대한 비용을 서체업체가 청구합니다. 요구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84

노무 및 회계 관련

01	공휴일이 휴가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88
02	최저임금과 퇴직 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8
03	대체공휴일의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89
04	1인 기업의 회계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89
05	1인 기업 운영 시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0
06	근무 중 법인명, 대표자, 사무실이 수차례 변경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1
07	당사의 근로계약서가 초과근로수당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92
08	2017년도에 작성한 당사의 취업규칙이 노동법률상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3

기타 및 특수사례

01	무료 이미지의 사용범위가 궁금합니다.	96
02	포트폴리오 도용의 대응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96
03	무료 이미지를 이용해 굿즈 등을 제작했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97
04	회사측의 강요로 서명한 퇴직각서를 무효화 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7
05	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와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차이와 발명카페 운영 시 특허법상 유의점을 문의합니다.	98
06	개발중인 교육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99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21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TEL	031-780-2234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팀)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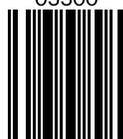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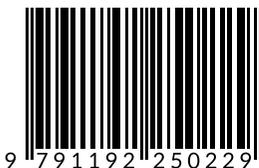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관련 의견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21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비매품/무료

03300



ISBN 979-11-92250-22-9